#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안민석 · 서영교 · 박 정

도종환 · 송갑석 · 김민기

문진석 · 고용진 · 김병욱

이동주 · 전혜숙 의원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 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고,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에 불과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 운 상황임.

교육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교육 합의 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 자치가 실현되는 백 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 4조).

자.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합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 명한다.
  - 1.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다)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제7조(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
-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및 평생·직업교육위원회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국가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5.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15조(교육부장관과의 관계) ①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교육부장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 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